

-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•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•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
-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•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•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



연수구보

구정방향

함께 가꿔요!

행복한 연수!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(우)406-120 ☎ 810-7072 / FAX 810-707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부록 제726호 2012. 12. 24.(월)

【고 시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-94호(인천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) 1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-95호(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소2-1, 소2-2, 소3-2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) 2

회 람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인천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인천도시계획시설【공공공지】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 되었기에 「같은 법」 제91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관계 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(☎810-7467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12. 12. 24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1. 사업 시행지(변경없음) :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-11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 - 종 류 : 인천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
 - 명 칭 :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조성 사업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(변경없음) : 면적 2,130㎡
 - 광장 963㎡, 수변시설 65㎡, 녹지 962㎡, 지하철 출입구 140㎡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 - 【성명】 주식회사 서부티앤디
 - 【주소】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12번지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(변경)
 - 【당초】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12. 12.
 - 【변경】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13. 3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(변경없음)

연번	소재지	지 번	지목	대장면적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
						성명	주소
1	동춘동	926-11	잡	8,927.10	8,927.10	인천광역시	
계				8,927.10	8,927.10		

7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 : 생략

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소2-1, 소2-2, 소3-2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인천도시계획시설【도로】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 되었기에 「같은 법」 제91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연수구청 건설방재과(☎810-7401) 및 도시계획과(☎810-7467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12. 12. 24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1. 사업 시행지의 위치(변경없음) : 인천 연수구 선학동 28-11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 - 종 류 : 인천도시계획시설 (도로:소2-1호선, 소2-2호선, 소3-2호선)
 - 명 칭 : 선학동 28-1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(변경없음) : 연장(L)=714.7m, 폭원(B)=6 ~ 8m
 - 소2-1호선 : 연장(L)=129.9m, 폭원(B)=8m
 - 소2-2호선 : 연장(L)=520.3m, 폭원(B)=8m
 - 소3-2호선 : 연장(L)=64.5m, 폭원(B)=6m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 - 성 명 :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 - 주 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(변경)
 - 당초 : 실시계획인가일 ~ 2012.12.31
 - 변경 : 실시계획인가일 ~ 2013. 6.30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(변경없음) : 생략
7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 : 생략